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1부  
2. 청 원 서 1부. 끝.

2016 년 8월 2일

청 원 인

성 명 : 이현수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이 현 수 (인) 외 37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현수
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08월 02 일
<p style="text-align: center;">소개의견</p> <p>청원인 이현수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입니다.</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6년 8월, 제 1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개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습니다.</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에 1억 원 미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직 공무원들의 소액 비리가 많아지고, 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기에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허나 이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5조에 1억 원 미만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고 기존의 형량도 모두 강화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p> <p>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국고 등 손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i> <li>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i> <li>3.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i> </ol>	

소개의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회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사례만 보더라도 경기 안산시 공무원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3억7300백만원을 횡령에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운영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무려 46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국고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입니다. 허나,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여 ‘하고 말지’식의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에게 마음속의 경종을 울리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발전하고 세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 2. 주요골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국고 등 손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p>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3.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청원인 성명 : 이현수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